

점 용 허가 조 건

1. 도시공원 점용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공원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조성, 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2. 점용자는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점용면적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침범·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, 허가 이후 점용과 관련한 주변 피해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3. 본 점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및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각종 보험과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허가자(점용자)가 부담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.
4. 점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우리구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와 본 점용허가 취소 시에는 공원 점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(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어야 함)하여야 한다.
5. 본 점용으로 훼손되는 공원부지는 건축계획(안)에 시설 및 조경복구하고 공원기능 향상이 수반되는 정비사항 필요시 훼손으로 인한 점용외 부지에 대하여도 우리구 요구에 따라 정비를(이행) 하여야 한다.
6. 특히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하고, 본 공사 및 원상복구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회산책로 개설, 기타 추가요구사항 등은 우리구와 세부적인 작업일정, 작업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.
7. 공사 구간 중 공원 이외의 부분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별도 협의하고, 공원 내 저촉되는 공원시설은 공사 전 우리구 관계자와 협의 처리하되, 건축물 건립은 관계부서 협의,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8. 점용으로 인한 저촉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설 등 별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.

9. 공원 훼손 방지 및 공원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과 자재적치 등은 공사구간 내로 하고, 외곽에 안전휀스를 공사구간과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.
10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이외의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허가와 별개로 해당 법령에 명시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11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중이라도 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가. 주변 도시공원(수목, 시설물 등)을 훼손하는 경우
 - 나. 본 점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민·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
 - 다. 본 점용이 도시공원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
 - 라. 공원녹지정비사업 등 관리청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점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
 - 마. 공원녹지관리청이 아닌 타기관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발주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본 점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바. 상기 “제1항” 내지 “제10항” 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12. 본 건과 관련된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에 대한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
13. 위에 명시된 문구 해석은 우리구 해석에 따른다.